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NASC
National Accounting Standard Center

기획재정부 위탁
국가회계기준센터

기획재정부/국가회계기준센터 국가회계 원가정보 활용방안

한국회계학회
December, 2013



Contents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현행 원가산출방식과 간접원가 배부방식에 대한 연구
 3. 재정사업의 성과평가시 원가정보 활용가능성 연구
 4.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원가정보 활용이 미흡한 원인을 분석하고, 원가정보를 활용한 성과평가 지표 개발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음

현행 원가산출방식과 간접원가 배부방식에 대한 연구

직접원가 산출방식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사업형회계의 간접원가 배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행정형회계의 간접원가 인식 검토

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 집계적 적정성 검토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원가정보 활용가능성 연구

원가정보를 활용한
재무비율지표의 개발

원가정보를 활용한
성과지표의 개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문헌을 검토하고, 2012회계연도 각 중앙관서의 예산서, 정부결산서, 성과보고서 사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

2. 현행 원가산출방식과 간접원가 배부방식에 대한 연구

직접원가 산출방식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행정지원 프로그램이 미지정되어 있거나, 정책사업 성격이지만 행정지원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어 프로그램원가와 관리운영비의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

프로그램원가 체계가 유연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원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해 유용한 원가정보가 산출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는 단위사업 단위로 원가정보를 공시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스템적·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프로그램원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금주의 프로그램예결산 정보와 유기적 연계를 보여줄 수 있는 연계정보 산출이 필요함

2. 현행 원가산출방식과 간접원가 배부방식에 대한 연구

직접원가 산출방식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_계속

※ 분석자료 1: 프로그램예결산과 프로그램총원가 차이분석

(단위: 억원)

중앙관서	프로그램명	2012년 프로그램예결산	2012년 프로그램총원가	차이	차이분석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지원	1,571	1,571	-	일치
	장애인생활안정지원	8,002	8,002	-	일치
	노인생활안정	33,217	33,223	(6)	거의 일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	331,615	343,183	(11,568)	세입세출외 거래(세계잉여금)
	공무원연금급여지급	104,215	223,911	(119,696)	지출액: 부채감소 원가: 부채전입액

※ 분석자료 2: 프로그램예결산과 프로그램총원가 연계 양식

프로그램	단위 사업	예산 현액	집행 금액(A)	자산 취득(B)	부채 상환(C)	기타 증감(D)	원가인식 (E=A-B-C-D)	발생 주의(F)	기타 조정(G)	간접 원가(H)	총원가 (I=E+F+G+H)

2. 현행 원가산출방식과 간접원가 배부방식에 대한 연구

직접원가 산출방식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_계속

원가집계단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현행 프로그램원가는 원가정보로서 활용이 실질적으로 어려우므로 세분화 정보 산출이 필요

- ▶ 중앙관서 차원에서는 정보제공 수준이나 정보양의 측면에서 현재와 같이 프로그램단위 원가정보가 적합할 수 있으나, 회계·기금단위의 경우 공시목적으로 단위사업단위의 원가정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 단위사업원가는 현행 예산편성과정상 정책목적을 실행할 수 있는 단위이자, 현금주의 예산결산서에서도 단위사업 단위로 정보가 제공되며, 성과보고서상 관리과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 ▶ 세부사업단위는 일종의 집행내역으로 원가정보의 산출이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공시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음. 그러나 세부사업 원가정보는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사업평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의 측정 및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관리되어야 할 것임

2. 현행 원가산출방식과 간접원가 배부방식에 대한 연구

사업형회계의 간접원가 배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현재 기금 등의 사업형회계의 경우 「원가계산준칙」 등에 근거하여 행정운영성 경비의 일부를 간접 원가로 1차 배부하고, 동 금액을 해당 프로그램원가에 2차 배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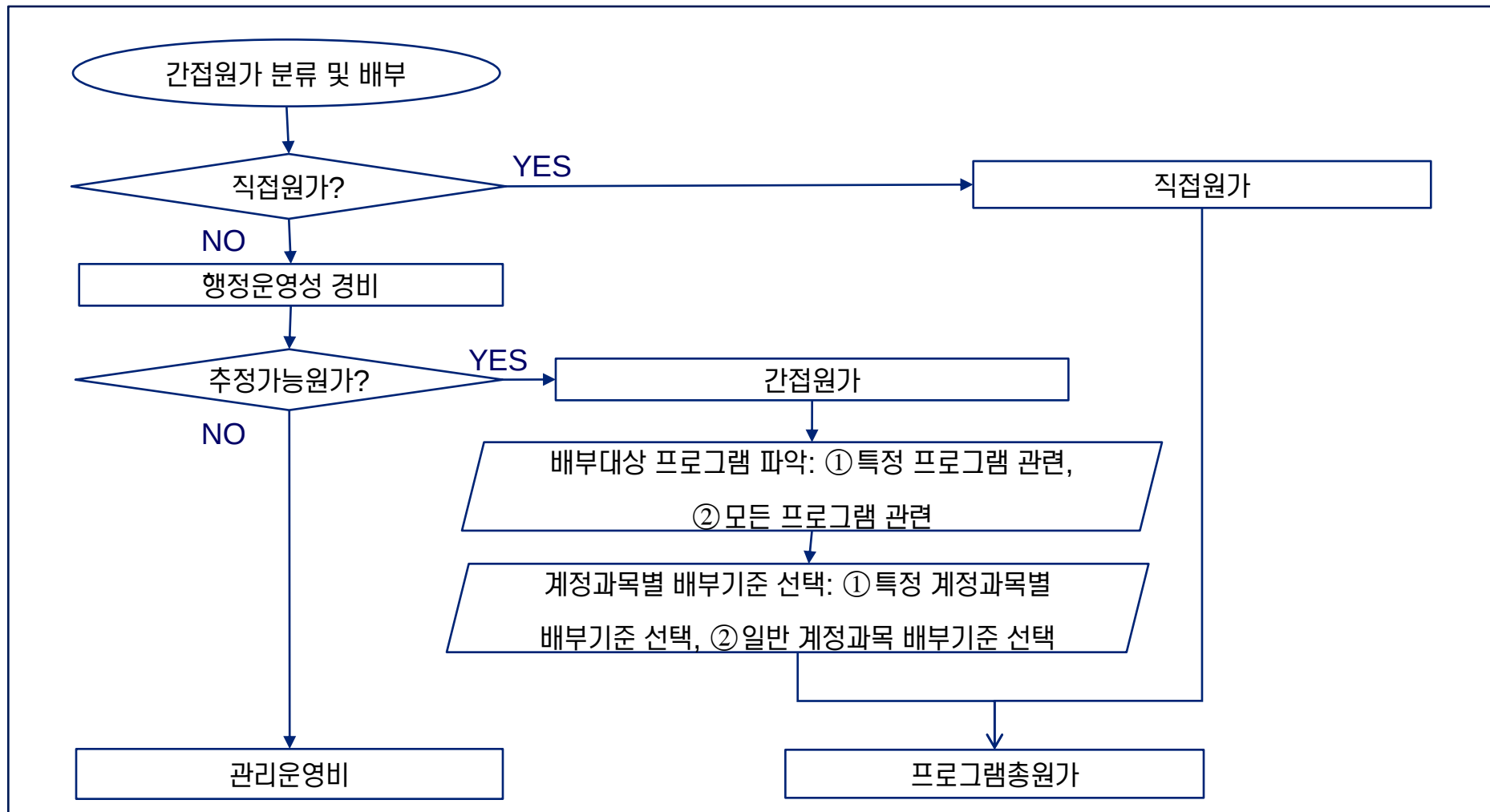
- ▶ 많은 사업형회계에서 1차 및 2차 배부기준으로 인건비 또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활용
- ▶ 기업에서는 제품원가 등에 배부하는 간접원가는 모든 공통비를 일정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원가에) 추적가능한 공통비만을 제품원가 배부대상 간접원가로 분류

사업형회계 역시 행정운영성 경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는 방식으로 간접원가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원가에 추적가능한 원가를 간접원가로 분류하고 이를 기준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에 (2차) 배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① 행정지원 프로그램의 파악(행정운영성 경비의 파악)
- ② 행정운영성 경비를 관리운영비와 간접원가로 분류하며, 행정운영성 경비가 발생하는 성격 또는 조직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원가집계 단위(조직, 세부사업, 특정 계정과목 등) 파악
- ③ 간접원가의 프로그램별 배부: 만일 ②단계에서 발생 성격이나 조직 등의 특성이 반영되었다면, 프로그램별 배부 역시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모든 프로그램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가장 합리적인 배부기준(인건비 등) 적용

2. 현행 원가산출방식과 간접원가 배부방식에 대한 연구

사업형회계의 간접원가 배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_계속



2. 현행 원가산출방식과 간접원가 배부방식에 대한 연구

행정형회계의 간접원가 인식 검토

현행 규정에서는 행정형회계의 경우 간접원가 배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프로그램총원가 과소계상 문제가 제기됨

▶ 이와 관련하여 예산편성부터 간접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사업수행경비)을 구분하는 방안 또는 예산은 그대로 두고 결산조정사항으로 간접원가를 배부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어 왔으나, 활용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임

행정형회계도 사업형회계와 마찬가지로 간접원가를 배부하는 것이 아닌 추적가능한 공통비를 분류하는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행정형회계에서 간접원가 배부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중앙관서 고유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로 인하여 특정 정책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 이를 강제적으로 배부하지 않고 정책을 수립하는 ‘본부(본청)’과 정책을 집행하는 ‘소속기관’을 구분하여 ‘소속기관’에 속하는 인건비 등만을 간접원가로 분류(즉, 추적가능한 공통비)하여 해당 정책사업에 2차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소속기관이 많다고 판단되는 6개 중앙관서의 ‘본부(본청)’ 인건비 및 경비와 ‘소속기관’ 인건비 및 경비를 비교할 때, 상당액이 ‘소속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소속기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특정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예를 들어 법무부 소속기관은 ‘교정활동’, ‘출입국관리’ 사업 등과 관련되며,

국토부 소속기관은 ‘항공발전지원’, ‘항공운영지원’, ‘도로관리’, ‘하천관리및홍수예보’ 사업 등과 관련됨

2. 현행 원가산출방식과 간접원가 배부방식에 대한 연구

행정형회계의 간접원가 인식 검토_계속

※ 분석자료: 중앙관서별 소속기관의 인건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백만원)

구분	법무부	농림부	국토부	환경부	중기청	산림청
소속기관 인건비 등	1,612,788	202,012	264,099	60,829	59,956	72,223
행정지원 지출액	1,786,448	373,347	436,025	155,367	134,437	141,928
비율	90.3%	54.1%	60.6%	39.2%	44.6%	50.9%
관리운영비	1,990,650	342,188	553,712	191,856	128,801	128,504
비율	81.0%	59.0%	47.7%	31.7%	46.5%	56.2%

각 정책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상세한 간접원가 분류 및 2차 배부 문제는 각 국가회계실체가 수행해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음

한편, 일부 중앙관서의 경우 본부(본청)과 소속기관의 인건비 등이 예산상으로 구분되지 않고 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보훈처 등), 법령에서 본부(본청)와 소속기관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 (경찰청 등)하므로 이는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임

3. 재정사업의 성과평가시 원가정보 활용가능성 연구

성과평가 지표의 원가정보 활용가능성 분석

현재 성과관리 체계는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예결산 체계와 일치하고는 있지만, 프로그램원가의 경우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음

- ▶ 프로그램원가가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성과보고서상 원가정보도 연계되어야 할 것이며, 실제 성과평가 지표에도 충분히 활용되어야 할 것임

물론 원가정보 활용가능성에 대한 선결사항으로 앞서 언급한 각종 원가집계의 적정성(직접원가의 산출, 간접원가의 배부 등)이 요구됨

원가정보를 활용한 성과평가 지표는 크게 재무비율지표와 성과지표로 구분될 수 있음

3. 재정사업의 성과평가시 원가정보 활용가능성 연구

성과평가 지표의 원가정보 활용가능성 분석_계속

구분	재무비율지표	성과지표
개념	- 국가회계실체의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 거시적 관점의 성과평가 지표	- 국가회계실체가 수행하는 개별 정책사업을 평가하는 지표 - 미시적 관점의 성과평가 지표
특징	- 원가정보 또는 재무정보로만 측정 - 금액 또는 비율(%)로 표시 - 동일 국가회계실체 내 시계열분석 가능 - 국가회계실체 간 횡단면분석도 가능하지만, 조직의 규모 및 성격, 전체적 정책사업의 특성, 재무구조의 차이, 예산의 규모 등에 따른 적절한 해석이 중요	- 성과지표의 특성에 따라 원가정보 활용 가능 여부가 다름 - 기존 성과지표는 ‘효과성’ 측면이 강조되었다면, 원가정보를 활용한 성과지표는 ‘효율성’ 이 강조됨 - 성과지표가 산출 또는 결과지표일 경우 정책 1단위당 원가 또는 원가1원당 정책결과 등으로 표시됨 -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사계열분석, 횡단면분석 등이 가능
주체	- 지표의 방향성 설정: 기획재정부 - 지표의 개발: 기획재정부 - 지표값 산출 및 해석: 각 국가회계실체 또는 중앙관서	- 지표의 방향성 설정: 기획재정부 - 지표의 개발: 각 국가회계실체 - 지표값 산출 및 해석: 각 국가회계실체 또는 중앙관서

3. 재정사업의 성과평가시 원가정보 활용가능성 연구

원가정보를 활용한 재무비율지표의 개발 및 사례분석

현재 국가회계에서는 재무비율지표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바, 기업회계 및 지자체회계의 재무비율 지표를 벤치마킹하고, 국가회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 개발

▶ 재정운영 측면 9개와 재정상태 측면 7개를 개발하여 제시함

주요지표명		측정산식	속성	지표값 설명 및 특성
1.	1인당 관리운영비	$\frac{\text{당년도 관리운영비}}{\text{국가회계실체내 인원수}}$ ※ 관리운영비 관련 인원수만 집계	↓	1인당 관리운영비의 국가회계실체간 비교 및 실체내 시계열 분석을 통해 행정관리의 효율성 추구 1인당 관리운영비가 과다하게 산출될 경우 국가회계실체의 부담이 될 것이므로 간접원가 계상의 유인책이 될 것임
2.	세출액 대비 재정운영순원가율	$\frac{\text{재정운영순원가}}{\text{세출액}} \times 100$	100	- 세출액 대비 당년도 자원 소비액 파악 - 실체간 비교를 통해 과다 자산 구입 등에 대한 내역 파악
3.	프로그램 자체재원 확보율	$\frac{\text{프로그램차감수익계}}{\text{프로그램총원가계}}$	↑	- 국가회계실체간 횡단면 분석은 어려움 - 국가회계실체내 시계열 분석의 경우 연도별 자체 재원 확보 노력 정도를 알 수 있음

3. 재정사업의 성과평가시 원가정보 활용가능성 연구

원가정보를 활용한 재무비율지표의 개발 및 사례분석_계속

주요지표명		측정산식	속성	지표값 설명 및 특성
4.	재정운영순원가의 국세의존율	$1 - (\text{비교환수익} \div \text{재정운영순원가})$ ※ $\text{비교환수익} = \text{재정운영표상비교환수익} + \text{순자산변동표상비교환수익}$ (단, 국고수입제외)	↓	-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재정운영순원가를 해당 국가회계실체 관련 재원으로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는지 분석 - 시계열 분석 가능. 단순한 횡단면 분석은 어려우나, 국가회계실체간 시계열 추세 비교 분석 가능
5.	장래세대부담비율	$\text{부채총계} \div (\text{일반유형자산} + \text{사회기반시설}) \times 100$	↓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채)부담이 가중 - 횡단면 분석은 어려우나, 실체간 시계열 추세 비 분석 가능 - 단, 실제 사례 분석 결과 측정산식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6.	총부채증가율	$(\text{당년도총부채} - \text{전년도총부채}) \div \text{전년도총부채}$	↓	- 일종의 재정건전성 지표 - 단순한 횡단면 분석은 어려우나, 국가회계실체간 시계열 추세 비교분석 가능
기타	관리운영비증가율, 프로그램원가별증가율, 인건비절감노력, 업무추진비절감노력, 비교환수익증가율, 세출액대비순자산증가율, 총자산회전율, 차입금의존도, 예산진행율			

3. 재정사업의 성과평가시 원가정보 활용가능성 연구

원가정보를 활용한 재무비율지표의 개발 및 사례분석_계속

중앙관서별 1인당 관리운영비 산출 및 분석결과

- ▶ 금융위, 교과부는 월등히 높은 반면, 국방부, 특허청, 지경부 등은 월등히 낮은 결과를 보여 정확한 해석 필요 신호를 제공
- ▶ 국무총리실, 법제처 등의 경우 1인당 관리운영비가 높은 관서인 반면, 전국적으로 소속기관이 많은 국세청, 경찰청은 낮은 관서인 것을 알 수 있음

중앙관서별 세출액 대비 재정운영순원가율 산출 및 분석결과

- ▶ 대부분의 중앙관서가 지표값 0.8~1.2를 기준으로 분포
- ▶ 행복청, 복지부, 기재부, 국토부, 농림부 등은 0.7미만으로 자체 수익이 많거나 자산 취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관서로 파악됨
- ▶ 전기대비 지표값이 증가한 문화재청, 방통위의 경우 자산취득 급증 등 재무제표에 미치는 추가 영향 분석 필요

중앙관서별 프로그램원가의 자체재원확보율 및 재정운영순원가의 국세의존율 산출 및 분석 결과

- ▶ 이 지표들은 결합하여 정책사업에 대한 재원의 원천을 분석
- ▶ 대부분의 중앙관서는 국세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것에 비하여, 기재부, 지경부, 농림부, 법무부, 고용부 등은 상대적으로 국세의존율이 낮음. 정확한 원인에 대한 상세 분석이 필요
- ▶ 복지부, 지경부, 금융위, 중기청, 행안부 등은 프로그램원가에 대한 자체재원조달의 비중이 높으며, 향후 국세수익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자체재원조달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 제공

3. 재정사업의 성과평가시 원가정보 활용가능성 연구

원가정보를 활용한 재무비율지표의 개발 및 사례분석_계속

※ 분석자료: 중앙관서별 1인당 관리운영비 산출 및 분석 결과 예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금융위원회	800,397,302	698,300,274	관리운영비 과대계상 가능성
교육과학기술부	439,676,403	200,152,915	관리운영비 과대계상 가능성
국무총리실	179,624,364	156,607,968	조직규모에 비해 인당관리운영비 높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8,631,434	75,115,756	지표증가폭이 큼, 원인파악 필요
법제처	123,942,729	109,974,004	조직규모에 비해 인당관리운영비 높음
행정안전부	100,567,490	82,352,641	지표증가폭이 큼, 원인파악 필요
해양경찰청	74,296,850	65,870,221	전국적으로 소속기관 등이 있는 기관
경찰청	70,847,203	65,469,209	전국적으로 소속기관 등이 있는 기관
지식경제부	18,959,485	6,555,538	관리운영비 과소계상 가능성
국방부	1,528,608	1,597,773	전국적으로 소속기관 등이 있는 기관

3. 재정사업의 성과평가시 원가정보 활용가능성 연구

원가정보를 활용한 성과지표의 개발 및 사례분석

정책사업별 성과지표에 원가정보를 활용하여야 하는 이유

- ▶ ①정책의 효율성을 측정하여 예산의 선택과 집중, 낭비 방지 추구, ②정책사업간 비교를 위한 성과지표의 표준화 가능, ③차기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규모 추정에 대한 정보 제공

원가정보 활용 측면에서의 현행 성과지표의 특성

- ▶ 성과지표는 모든 국가회계실체가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일반화된 지표가 아님. 단, 유사 지표 분석을 위해서 표준화 과정 필요
- ▶ 모든 현행 성과지표가 원가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 성과지표와 원가정보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세부사업 변경 또는 측정산식의 변형이 필요함
- ▶ 시계열분석과 횡단면분석의 가능성은 지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원가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종류

- ▶ ①원가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 ②원가정보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 ③측정산식의 의미를 변화시킬 경우 활용 가능한 지표, ④활용이 불가능한 지표가 있음

원가정보의 표시방법에 대한 논의

- ▶ 효율성을 의미하는 측면에서는 ‘원가 1원당 정책사업 효과’가 타당할 수 있으나, 차기 예산규모에 대한 정보 제공, 유사 지표간 비교분석을 위한 표준화를 고려하면 ‘정책 1단위당 원가’가 바람직할 수 있음

3. 재정사업의 성과평가시 원가정보 활용가능성 연구

원가정보를 활용한 성과지표의 개발 및 사례분석_계속

원가정보를 성과지표에 사용하기 위한 선결 조건

- ▶ 원가정보를 성과지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가의 집계가 성과지표별로 산출되는 것(1:1매칭)이 가장 바람직함.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세부사업의 조정, 측정산식의 변형 등의 선결 작업이 필요
- ▶ 또한, 성과지표에 따라 원가정보가 아닌 정책사업 자원투입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재무정보도 충분히 활용 가능

※ 분석자료: 성과지표와 세부사업 결산의 연계 사례

(단위: 백만원)

회계(관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12년결산	관련 성과지표	사업과 지표 관계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부)	환경친화적 경제사회 기반 조성	녹색생활확산및선도사업지원	1,831	①녹색경영 보급대상 기업 수	대체로 일치하나 불명확, 원가2개지표1개
		녹색환경경제기반구축	4,103		
		환경교육강화	7,909	②환경교육만족도 ③환경교육인원수	원가1개지표2개
		저탄소녹색도시 조성	12,174	⑤광릉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선 도사업공사 진척율	대체로 일치하나 불명확
		영세중소기업환경기술지원사업	1,500	④환경시설 개선지원 업체수	일치

3. 재정사업의 성과평가시 원가정보 활용가능성 연구

원가정보를 활용한 성과지표의 개발 및 사례분석_계속

원가정보를 성과지표에 활용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방향

단계	구분	원가정보 활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 판단 기준
1단계	현행 성과지표의 성격 파악 및 원가정보 활용방법 모색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과지표의 종류 파악(투입, 과정, 산출, 결과) - 성과지표에 원가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원가정보의 주도적 활용, 보조적 활용, 현행 성과지표의 변형, 원가정보 활용 불능 등)
2단계	성과지표별 원가정보 산출 여부 파악	- 성과지표와 단위·세부사업의 연계 여부 파악 1:1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원가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지 고려 - 경우에 따라서는 원가정보가 아닌 자산·부채 등의 재무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3-1단계 (분석1) (분석2) (분석3)	원가와 성과지표의 상관관계 파악	- 원가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일정한 상관관계 필요 - 성과지표의 변수가 정책개입과 관련이 없는 외부 변수인지, 정책사업 개입으로 변동될 수 있는 변수인지 파악 필요

3. 재정사업의 성과평가시 원가정보 활용가능성 연구

원가정보를 활용한 성과지표의 개발 및 사례분석_계속

단계	구분	원가정보 활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 판단 기준
3-2단계 (분석4)	부(-)의 상관관계 적용 배제	- 원가와 성과지표가 부(-)의 상관관계는 원가정보 활용이 거의 불가능 - 다만, 정책목표가 부(-)의 방향이라 할지라도 성과는 정(+)의 관계를 가질 수도 있음에 주의
3-3단계 (분석5)	변화율 방식의 측정산식은 제외	변화를 측정을 기본으로 하는 성과지표는 원가정보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의 필요
3-4단계 (분석6)	기존 측정산식의 변형 가능성 검토	현행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나, 성과지표의 의미를 변화시켜 기존의 원가정보를 활용한 성과지표로 변환될 수 있는지 검토
3-5단계 (분석7)	만족도 지표의 특성 파악	만족도 또는 향상도 관련 지표는 원가정보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이해
3-6단계 (분석8)	SOC사업 또는 시설확 충사업의 여부	- SOC사업 또는 시설확충·개선사업의 경우 표준화된 성과 단위를 결정할 수 있는지 검토 - SOC사업 또는 시설확충·개선사업의 경우 원가정보 외에 자산취득 등의 재무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음을 이해

3. 재정사업의 성과평가시 원가정보 활용가능성 연구

원가정보를 활용한 성과지표의 개발 및 사례분석_계속

※ 분석자료 1: 외적 변수로 인해 원가정보 활용이 어려운 성과지표 사례

관서	성과지표	현행 측정산식	원가정보 활용이 어려운 이유	비고
농림부	식품제조업 매출액성장률	$(\text{당년식품제조업매출액} - \text{전년도매출액}) \div \text{전년도매출액}$	식품제조업매출액은 외적 변수로서 정책사업 개입으로 직접적인 통제가 어려움	결과지표

※ 분석자료 2: 외적 변수처럼 보이지만 원가정보 활용이 가능한 성과지표 사례

관서	성과지표	현행 측정산식	비교 성과지표	원가정보 활용 이유
농림부	농식품시설현대화 업체 매출액 증가율	지원업체(지원후 가동업체) 당해연도매출액 $\div$ 전년도매출액 $\times 100 - 100$	식품제조업 매출액 증가율	농식품시설현대화매출액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결과 발생한 매출액 변화율이므로 원가활용이 가능함

※ 분석자료 3: 원가정보 활용이 가능한 성과지표의 사례

관서	성과지표	현행 측정산식	원가정보 활용 산식 제안	제안산식의 특성
환경부	환경기술 전문 인력 양성자수	온실가스 및 토양지하수 고 용연계과정 인력 양성자수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 인원당 원가 [=원가 $\div$ 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 인원수]	- 시계열분석 가능 - 유사사업과 시계열 추세비교 가능

3. 재정사업의 성과평가시 원가정보 활용가능성 연구

원가정보를 활용한 성과지표의 개발 및 사례분석_계속

※ 분석자료 4: 부(-)의 정책목표를 가지는 성과지표의 원가정보 활용가능성 분석

관서	성과지표	현행 측정산식	원가정보 활용 여부	개선산식 또는 대체산식
농림부	어업지도정보화 관련 업무처리기간 단축률	(최종업무보고완료일자-현장지도 ·감독일자) ÷ 시스템구축전 업무처 리기간	부(-)의 정책목표로 인하여 원가정 보 활용 지표의 개발이 어려움	해당사항 없음
환경부	전기자동차보급에 따른 온실가스 동시 감축량	CO ₂ 감축량=12년 전기차 보급대 수 × 2.4톤/년	부(-)의 정책목표이나, 측정값이 원 가와 정(+)의 상관관계 예상	CO ₂ 감축량 1단위당 원가 [=원가 ÷ (CO ₂ 감축량=12년 전기차보급대수 × 2.4톤/년)]

※ 분석자료 5: 변화율로 측정되는 성과지표의 원가정보 활용가능성 분석

관서	성과지표	현행 측정산식	원가정보 활용 여부	비고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량률	(전년도 예상 발생량-전년도 실제 발 생량) ÷ 전년도 예상 발생량 × 100	해마다 값이 변동됨 (실제 10,11,12년 실적치의 경우 각각 10%, 26%, 20.2%임)	원가정보 활용이 어려울 것임

3. 재정사업의 성과평가시 원가정보 활용가능성 연구

원가정보를 활용한 성과지표의 개발 및 사례분석_계속

※ 분석자료 6: 대체적 성과지표의 원가정보 활용가능성 분석

관서	성과지표	현행 측정산식	원가정보 활용한 대체 지표	대체산식의 특성
농림부	원산지표시 이행률(%)	표시이행수 ÷ 조사대상수 × 100	조사대상수 당 원가[원가 ÷ 조사대상수] ⇒ 산출지표에서 결과지표로 변환	- 시계열분석 가능 - 유사사업과 시계열 추세비교가능

※ 분석자료 7: 만족도 성과지표의 원가정보 활용가능성 분석

관서	성과지표	현행 측정산식	원가정보 활용 여부	비고
고용 노동부	청년직장채용 프로그램 참여자만족도(%)	7점 척도에 의한 설문조사결과 100점 만점으로 환산	만족도 지표. 단, 10,11,12년 만족도가 각각 89.8, 86, 86.6으로 변동이 있음	원가정보 활용이 어려울 것임 - 만족도 변동이 있음

※ 분석자료 8: 보충적 성과지표의 원가정보 활용가능성 분석

관서	성과지표	현행 측정산식	원가정보 활용 산식 제안	제안산식의 특성
농림부	농지개발 진척률(%)	누적개발농지면적 ÷ 개발목표면적 × 100	당기개발농지면적당 투입예산[투입액 ÷ 당기개발농지면적] ⇒ 원가정보가 아닌 투입금액(대부분 자산증가)	시계열분석 가능. 성과 변수 파악이 쉬움. 보조지표 역할

4. 결론 및 정책적 제언

국가회계 원가정보 활용방안 연구 결과 요약

구분	원가집계의 적정성	원가정보 활용 성과평가
연구목적	- 현행 재무제표상 원가집계 오류 원인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 원가집계 적정성은 원가정보 활용 성과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선결사항	발생주의 원가정보 활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성과평가 지표 개발 필요
문제점	- 행정지원 프로그램 미지정 등으로 인해 일부 프로그램원가 산출(직접원가)에 오류 발생 - 프로그램예결산과 프로그램원가의 연계정보가 산출되지 않음 - 단위사업원가공시 문제 및 세부사업원가 관리과정 미흡 - 사업형회계 간접원가 배부방식이 회계·기금별로 상이 - 행정형회계는 간접원가 미배부 - 비배분비용·수익의 과대계상	- 성과평가 체계와 프로그램예결산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 존재 - 현행 성과평가 지표는 원가정보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성과평가를 위하여 원가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 미흡 - 성과지표와 세부사업원가 매칭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지 않음

4. 결론 및 정책적 제언

구분	원가집계의 적정성	원가정보 활용 성과평가
개선방안	- 적정한 프로그램원가가 산출되도록 제반 오류사항 수정 필요 - 세출액과 프로그램원가의 연계 정보 산출(시스템 보완 필요) - 원가단위 세분화 관련 공시 적정성 및 세부사업원가 내부관리 - 간접원가의 배부는 간접원가의 분류와 프로그램원가로의 2차 배부의 과정으로 재정립 필요 - 행정형회계의 경우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소속기관의 인건비 및 경비를 간접원가 분류 및 프로그램별 2차 배부 대상으로 설정 필요 - 소속기관 인건비 등이 구분되지 않는 중앙관서의 경우 예산구분이나 법령정비 등의 선결 필요 - 비배분비용·수익의 과대계상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원가 인식 유연화, 연기금·금융성기금 여유자금운용 결과 원가화 필요	- 관리과제와 단위사업원가 체계 일치 필요 -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로 재무비율지표와 원가활용 성과지표로 2원화하여 개발 필요 - 국가회계실체(중앙관서 포함)에 부합하는 재무비율지표를 위하여 16개 지표 제시 - 정책사업에 대한 원가정보 활용 성과지표의 필요성, 성과지표의 특성, 측정산식의 방침 등 체계적 방향 제시 - 세부사업원가와 성과지표가 연계될 수 있도록 각 국가회계실체에서 세부사업원가 관리 필요 - 모든 성과지표가 원가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바, 원가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성 제시(6가지 고려사항 제시)

4. 결론 및 정책적 제언

구분	원가집계의 적정성	원가정보 활용 성과평가
수행주체	- 프로그램원가 오류의 수정 ⇒ 각 국가회계실체(중앙관서) - 단위사업원가 공시 및 세부사업원가 내부관리 ⇒기본 방침은 기획재정부, 실제 원가의 산출 및 관리는 국가회계실체 - 간접원가 분류 및 2차배부 방침 정립 ⇒ 기획재정부 - 적정한 간접원가의 배부 ⇒ 각 국가회계실체 - 비배분비용·수익의 적정성 확보 ⇒ 각 국가회계실체	- 원가정보를 활용한 성과평가의 지표 개발 기본 방침 수립 ⇒ 기획재정부 - 재무비율지표의 개발 ⇒ 기획재정부 - 재무비율지표값의 산출 및 해석 ⇒ 각 국가회계실체(중앙관서) - 원가정보 활용 가능한 성과지표 개발 방향성 정립 ⇒ 기획재정부 - 원가정보 활용 성과지표의 개발 ⇒ 각 국가회계실체(중앙관서)

4.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원가정보를 활용한 성과지표 확대를 위한 기획재정부 추진 방안

기획재정부는 앞서 설명한 원가정보 활용을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단계적 고려사항 등을 지침화하여 각 국가회계실체에 전달

행정형회계에서도 행정운영성 경비에서 간접원가를 분류할 수 있도록 제반 방안을 제도화
(1인당 관리운영비 등 재무비율지표를 통한 유도 정책 병행)

원가정보를 활용한 성과지표의 개발 정도에 따라 일정한 유인책 제공. 이는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련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내 예산안 편성시 이를 감안하도록 조치 필요

동시에 원가정보를 활용한 성과지표의 개발 목표를 각 국가회계실체(또는 중앙관서)에 강제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 부과

민간전문가 또는 학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성과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필요

감사합니다